

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펀드코드: 39152)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3년 03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3년 03월 3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는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2023.03.22)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펀드코드: 39152]

투자위험등급 : 6등급[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6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 및 시장 상황의 변동성 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신용등급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 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등을 주된 투자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 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없음	0.240	0.175	0.19	0.244	25	51	79	1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없음	0.150	0.085	0.24	0.154	16	32	50	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없음	0.105	0.040	-	0.109	11	23	35	6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 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종류A형(선취판매수수료징구)이 없어, 투자시 종류A형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 일	최근 1년 2021.12.06~ 2022.12.05	최근 2년 2020.12.06~ 2022.12.05	최근 3년 2019.12.06~ 2022.12.05	최근 5년 2017.12.06~ 2022.12.05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2003.11.14	1.83	1.19	1.05	1.22	2.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2016.06.02	1.92	1.28	1.14	1.32	1.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2018.03.19	1.97	1.33	1.19		1.35			
	비교지수	2003.11.14								
	수익률 변동성	2003.11.14	0.11	0.11	0.10	0.08	0.09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국내단기금융(MMF), 단위: %)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은영	1986	팀장	7 개	69,163 억원	2.63	1.76	2.77	1.86	7년 2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단기상품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과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자산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 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수익자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789-0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woomam.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1좌는 1원)		
효력발생일	2023년 3월 31일	종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미징구 (C)	온라인 (e)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일정시점이 지나 환매할 경우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수수료선취형(A)이 없어, 투자시 수수료 선취(A)형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8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8
3. 모집예정금액.....	8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8
5. 인수에 관한 사항.....	8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8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9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0
4. 집합투자업자.....	1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3.03.22 현재).....	11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2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5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6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9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2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4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6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28
1. 재무정보.....	2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31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4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4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36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36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6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7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7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8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8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40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1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3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44
[붙임] 용어풀이.....	4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펀드코드: 39152)		
클래스(종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E302	BE304	C605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단기금융(MMF)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원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및 판매합니다.
-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 3)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펀드코드: 39152)		
클래스(종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E302	BE304	C605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3.11.14	최초설정
2004.09.15	신탁약관 전면 개정
2005.02.18	투자대상관련 변경
2005.06.07	Late Trading 반영
2005.07.11	사명 변경등
2005.11.07	MMF 감독규정 완화 반영(편입대상, 편입한도 확대)
2005.11.21	법인용 MMF 익일환매제 시행
2006.07.01	법인용 MMF 익일매입제 시행
2008.06.30	정부투자기관 발행 어음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30%까지 확대
2009.05.04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전면개정 (프런티어 국공채MMF 제3호(법인용) → 우리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2009.05.28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의 건 등
2009.0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반영 및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갱신(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내용 및 운용자산규모) 등
2011.06.20	- 이익분배 명확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임의해지,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세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2011.12.28	- 우리은행 일반사무관리부 분사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우리은행→우리펀드서비스) (2011.08.08. 영업개시)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신고서(투자설명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등
2012.12.26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공시 및 보고서 등)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변경
2013.04.24	- 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 채권평가회사 추가 (에프엔자산평가)
2013.11.15	- 전자단기사채등 추가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 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2014.04.15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
2014.12.18	- 집합투자업자 명칭 및 이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경(우리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용전문인력 삭제, 2014.12.01.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14.10.01) 등

2015.01.30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15.09.17	- 투자신탁 보수율 변경 -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2015.12.18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6.03.03	- MMF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5.1.21) 반영
2016.05.20	-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 Class C1, Class C-e 추가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7.01.19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8.01.24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8.03.16	- 신탁업자보수율 인하 - Class C-I 추가
2019.06.24	- 투자대상자산 보완 - 신탁업자보수율 인하 -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추가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8.1)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19.9.16.)에 따른 내용 반영
2019.12.20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전자증권법 시행('19.9.16.)에 따른 내용 추가 반영
2020.10.28	- 운용전문인력 변경(문병석→조상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12.30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21.02.05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19.9.16.)에 따른 내용 추가 반영
2021.08.13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조상희 → 안형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1.12.28	-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자산의 문구 수정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안형상 → 김은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22.04.01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제7-15조)에 따른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 변경
2022.12.22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등
<u>2023.03.31</u>	<u>-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반영</u> <u>(2022.04.01시행 2023.04.01적용분)</u>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대표전화: 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3.03.22 현재)

1)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국내단기금융(MMF),단위:%)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은영	1986	팀장	7 개	69,163 억원	2.63	1.76	2.77	1.86	*운용경력: 7년 2개월 (2011.01. ~ 2012.08)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팀 (2012.08. ~ 2021.08.) 신한자산운용 머니마켓운용 실 (2021.08.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단기상품 운용팀 팀장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단기상품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문병석	2005.06.01 ~ 2020.10.27
조상희	2020.10.28 ~ 2021.08.12
안형상	2021.08.13 ~ 2021.12.27
김은영	2021.12.28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 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2)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일정시점이 지나 환매할 경우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수수료선취형(A)이 없어, 투자시 수수료 선취(A)형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국공채**,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분	내용
투자대상 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의 투자대상에 운용합니다. -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합니다)·사채권(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한하며,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 다만, 환매조건부채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다. 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 -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단기사채 등 - 환매조건부채도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자산의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합니다)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구분	내용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 · 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 · 기업어음증권 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합니다)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②의 1.부터 3.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②의 4.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 3. ②의 5.부터 7.에 해당하는 것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단기사채 등 및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 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②의 1.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합니다. 이하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에서 동일합니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②의 2. 및 3.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과 투자신탁자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4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합니다. 이하 ‘운용 및 투자제한’에서 동일합니다.)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이하에서 동일합니다.)을 제외합니다. 이하 ‘운용 및 투자제한’에서 동일합니다.]에 운용하는 행위 가. 채무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어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로 합니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의2.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 만기 30일 이내일 것 -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다. 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 4.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	---

	8.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나. 단기금융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다. 주식관련 사채권 및 사모사채 라. 외화로 표시된 자산 마.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바. 위의 마.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9.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집합투자계약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2.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합니다)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현금 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다. 양도성 예금증서 라.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마.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합니다) 바.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사.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계약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계약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① 국공채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② 경제지표 및 종목 분석을 통하여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 ③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1항제2호에 한한 자산을 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 ① 법령에 의한 잔존만기, 신용평가 등급 및 분산투자 제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당사 고유의 투자가능 종목/수량 관리를 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② 유동성제약자산 보유비율 상한선 및 가용현금 보유비율 하한선을 정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주1)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특성상 별도 비교지수는 없으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수익구조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는 투자신탁자산을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정기예금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손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가능 합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 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 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과 시가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자산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 증권에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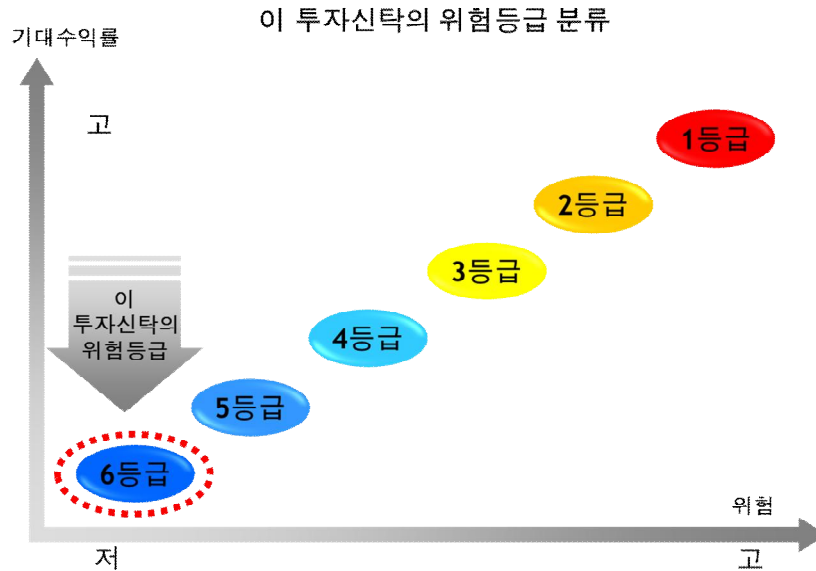
3) 기타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0.09%로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국공채, 양도성 정기에금, 어음 등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국내 국공채 및 양도성 정기에금, 어음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투자자산의 신용등급이 상위 2개 등급으로 제한되고 가중평균잔존만기는 60일 이내로 제한되며 장부가 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이며, 단기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원금이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시가와 장부가와의 괴리율이 0.5%를 초과하게 되면 시가평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최직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율화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 등급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분류기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 매입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 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Class 구분	판매 기준
Class C1 수익증권	제한 없음
Class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Class C-l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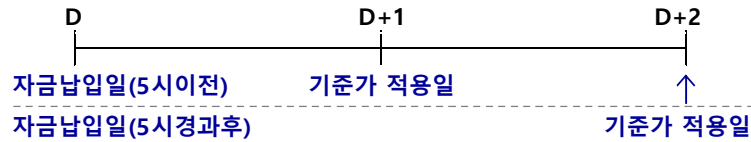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③ 판매회사는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④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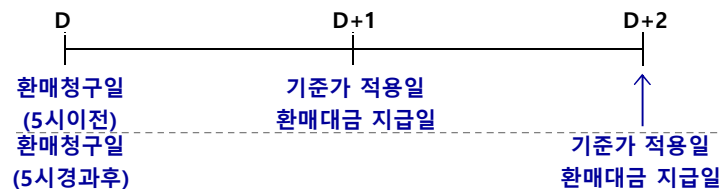
가.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③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판매회사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⑤ 판매회사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라.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바.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집합투자규약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환매가격
 -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 환매연기사유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⑤ 및 ⑥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⑧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①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⑨ ⑧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⑩ 집합투자업자는 ②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자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⑪ 집합투자업자는 ⑩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계약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⑫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사.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계약 제19조제3항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평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30%)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⑥ 제5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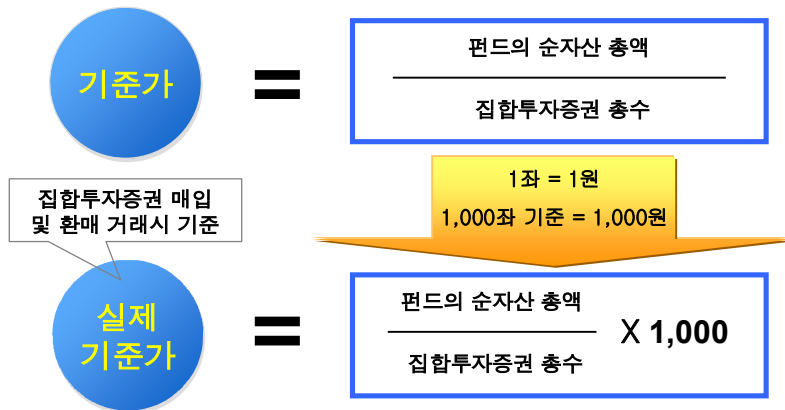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서류공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의 인터넷 홈페이지

- 주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클래스별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별로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합니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주1)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장부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 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주2)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주2) 집합투자계약 제19조 제3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에는 법 제2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주3) 장부가가격 평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장부가가격과 시가의 괴리를 확대 등 선회매유인 발생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하 “일시적 대량환매”라 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 주4)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	------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①-2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일의 최종시가 또는 2인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일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 없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해 가입한 자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납입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자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	-----	-----	-----

주1)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 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 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1)	0.0450	0.1750	0.0100	0.0100	0.2400	0.19	0.0042	0.2442	0.2442	0.005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0450	0.0850	0.0100	0.0100	0.1500	0.24	0.0042	0.1542	0.1542	0.005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l)	0.0450	0.0400	0.0100	0.0100	0.1050		0.0042	0.1092	0.1092	0.0058
지급시기	매6개 월/사유 발생시	매6개 월/사유 발생시	매6개 월/사유 발생시	매6개 월/사유 발생시	-	-	사유발 생시	매6개 월/사유 발생시	매6개 월/ 사유발 생시	사유발 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1.11.14 ~ 2022.11.13]

주2)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증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증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1.11.14 ~ 2022.11.13]

주3)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이자비용, 현금담보이자비용 등 기타 이자비용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 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행분담금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계기간 중 해당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증권거래비용	156,985
금융비용	0
발행분담금	0

주5)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해당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7)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8)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차감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0.00%]를 추정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	51	79	138	31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5	51	79	138	3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	32	50	87	19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	32	50	87	1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	23	35	62	14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	23	35	62	141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주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를 0%,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가.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계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계약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펀드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9 기 (2021.11.14 ~ 2022.11.13)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18기 (2020.11.14 ~ 2021.11.13)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17기 (2019.11.14 ~ 2020.11.13)	대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9 기	제18기	제17기
	(2022.11.13)	(2021.11.13)	(2020.11.13)
운용자산	2,096,212,988,825	4,101,076,542,581	1,363,248,173,109
증권	1,856,457,330,842	3,741,050,955,259	1,203,707,743,19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39,755,657,983	360,025,587,322	159,540,429,91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8,305,576,627	47,889,767,018	2,462,706,996
자산총계	2,114,518,565,452	4,148,966,309,599	1,365,710,880,10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8,565,870	33,722,068	12,709,456
부채총계	18,565,870	33,722,068	12,709,456
원본	2,074,567,344,088	4,117,401,513,000	1,351,153,535,541
수익조정금	-9,282,397,532	17,159,819,843	1,241,009,054
이익잉여금	49,215,053,026	14,371,254,688	13,303,626,054
자본총계	2,114,499,999,582	4,148,932,587,531	1,365,698,170,649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9 기	제18기	제17기
	(2021.11.14 ~ 2022.11.13)	(2020.11.14 ~ 2021.11.13)	(2019.11.14 ~ 2020.11.13)
운용수익	41,728,004,057	12,652,608,890	11,294,908,248
이자수익	41,218,739,639	14,484,187,953	13,492,150,375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509,264,418	-1,831,579,063	-2,197,242,127
기타수익	7,715,317,052	1,880,544,181	2,137,042,516
운용비용	-168,372,033	-117,329,013	-94,846,62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168,372,033	-117,329,013	-94,846,620
기타비용	-59,896,050	-44,569,370	-33,478,090
당기순이익	49,215,053,026	14,371,254,688	13,303,626,054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 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3) 회계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19기(2022.11.13)		제18기(2021.11.13)		제17기(2020.11.13)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39,755,657,983		360,025,587,322		159,540,429,913
1. 현금및현금성자산	239,755,657,983		360,025,587,322		159,540,429,913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813,894,140,860		2,472,846,704,855		679,194,516,925
1. 콜론	11,700,000,000		10,700,000,000		70,400,00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228,200,000,000		1,223,500,000,000		170,500,000,000	
3. 매입어음	573,994,140,860		1,238,646,704,855		438,294,516,925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1,042,563,189,982		1,268,204,250,404		524,513,226,271
1. 자본증권	0		0		0	
2. 채무증권	1,042,563,189,982		1,268,204,250,404		524,513,226,271	
3. 수익증권	0		0		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18,305,576,627		47,889,767,018		2,462,706,99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41,986,660,000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18,246,636,496		5,837,799,802		2,455,810,664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58,940,131		65,307,216		6,896,332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2,114,518,565,452		4,148,966,309,599		1,365,710,880,105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18,565,870		33,722,068		12,709,456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18,565,870		32,428,436		12,709,456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1,293,632		0	
부 채 총 계		18,565,870		33,722,068		12,709,456
자 본						
1. 원 본	2,074,567,344,088		4,117,401,513,000		1,351,153,535,54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9,282,397,532		17,159,819,843		1,241,009,054	
3. 이월잉여금	49,215,053,026		14,371,254,688		13,303,626,054	
(발행좌수 당기: 2,074,567,344,088 차 전기: 4,117,401,513,000 차) (기초가격 당기: 1,351,153,535,541 차) 전기: 1,019.25 원 전전기: 1,007.66 원 전전전기: 1,010.76 원)		49,215,053,026		14,371,254,688		13,303,626,054
수익조정금	0		0		0	
자 본 총 계		2,114,499,999,582		4,148,932,587,531		1,365,698,170,64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114,518,565,452		4,148,966,309,599		1,365,710,880,105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과 목	제19기(2021.11.14 ~ 2022.11.13)		제18기(2020.11.14 ~ 2021.11.13)		제17기(2019.11.14 ~ 2020.11.13)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48,934,056,691		16,364,732,134		15,629,192,891
1. 이 자 수 익	41,218,739,639		14,484,187,953		13,492,150,375	
2. 배당금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7,715,317,052		1,880,544,181		2,137,042,516	
4. 기타투자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58,996,687		142,905,185		519,742,298
1. 자본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702,833,766		102,698,386		150,318,916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0		0		284,866,823	
4. 현금및대체채권매매/평가차익	56,162,921		40,206,799		84,556,559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49,732,269		1,974,484,248		2,716,984,425
1. 자본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224,160,086		1,956,638,777		2,445,689,476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4. 현금및대체채권매매/평가차손	25,572,183		17,845,471		271,294,949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228,268,083		161,898,383		128,324,710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사무수탁수수료	0		0		0	
5. 지급수수료	228,268,083		161,898,383		128,324,710	
6.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49,215,053,026		14,371,254,688		13,303,626,05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23723044		0.00349037		0.00984612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1.14 ~ 2022.11.13	41,174	41,174	170,345	171,572	190,773	192,093	20,746	20,746
2020.11.14 ~ 2021.11.13	13,512	13,512	129,861	130,456	102,199	102,622	41,174	41,174
2019.11.14 ~ 2020.11.13	12,711	12,711	81,715	82,211	80,915	81,398	13,512	13,512

나.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21.11.14 ~ 2022.11.13	5,692	5,692	25,225	25,331	28,220	28,354	2,696	2,696
2020.11.14 ~ 2021.11.13	7,378	7,378	38,200	38,285	39,886	39,974	5,692	5,692
2019.11.14 ~ 2020.11.13	6,097	6,097	44,373	44,596	43,093	43,306	7,378	7,378

다.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21.11.14 ~ 2022.11.13	882	882	4,292	4,320	4,866	4,905	308	308
2020.11.14 ~ 2021.11.13	277	277	1,628	1,634	1,023	1,026	882	882
2019.11.14 ~ 2020.11.13	132	132	1,069	1,076	924	930	277	277

라.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21.11.14 ~ 2022.11.13	34,646	34,646	140,609	141,606	157,491	158,532	17,764	17,764
2020.11.14 ~ 2021.11.13	5,877	5,877	90,001	90,391	61,232	61,476	34,646	34,646
2019.11.14 ~ 2020.11.13	6,501	6,501	36,116	36,311	36,740	36,934	5,877	5,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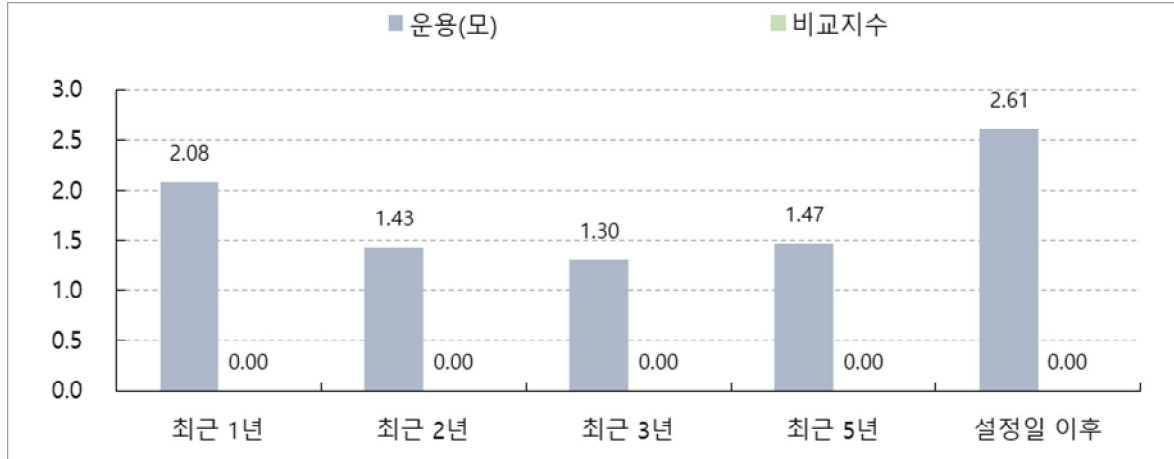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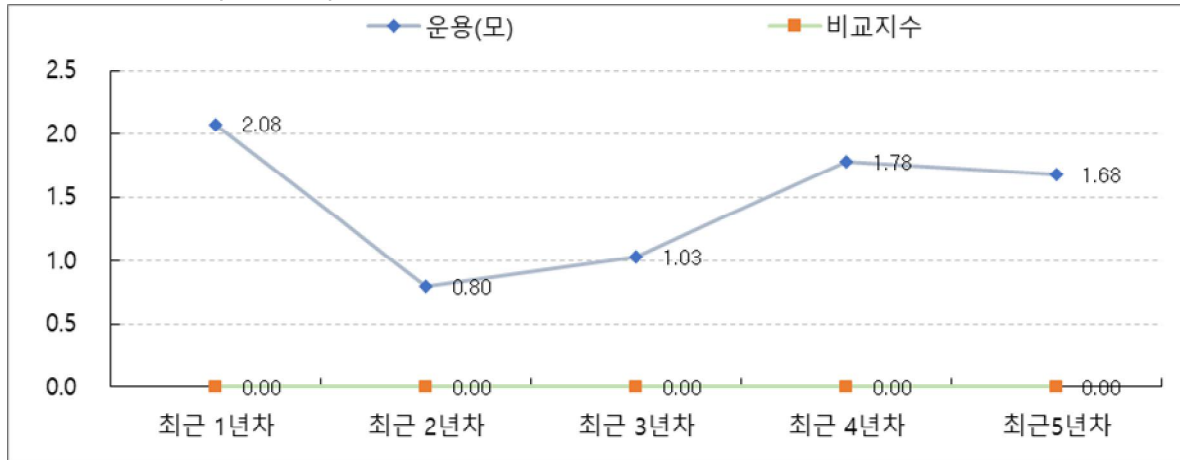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1.12.06~ 2022.12.05	2020.12.06~ 2022.12.05	2019.12.06~ 2022.12.05	2017.12.06~ 2022.12.05	2003.11.14~ 2022.12.05
운용(모)	2003.11.14	2.08	1.43	1.30	1.47	2.6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 변동성		0.11	0.11	0.10	0.08	0.09
C1	2003.11.14	1.83	1.19	1.05	1.22	2.52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C-e	2016.06.02	1.92	1.28	1.14	1.32	1.29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C-I	2018.03.19	1.97	1.33	1.19		1.35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연도별수익률추이 (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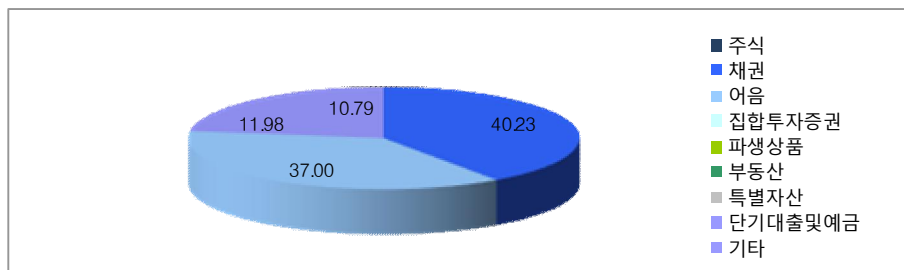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1.12.06~ 2022.12.05	2020.12.06~ 2021.12.05	2019.12.06~ 2020.12.05	2018.12.06~ 2019.12.05	2017.12.06~ 2018.12.05
운용(모)	2003.11.14	2.08	0.80	1.03	1.78	1.68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C1	2003.11.14	1.83	0.55	0.78	1.53	1.43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C-e	2016.06.02	1.92	0.64	0.87	1.62	1.52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C-I	2018.03.19	1.97	0.69	0.92	1.67	1.15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5) Class C-I: 최근 5년차 수익률은 8.61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2.11.13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0)	8,506.8 (40.23)	7,822.9 (37.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2,532.9 (11.98)	2,282.6 (10.79)	21,145.2 (100.00)
KRW	0.0 (0.00)	8,506.8 (40.23)	7,822.9 (37.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2,532.9 (11.98)	2,282.6 (10.79)	21,145.2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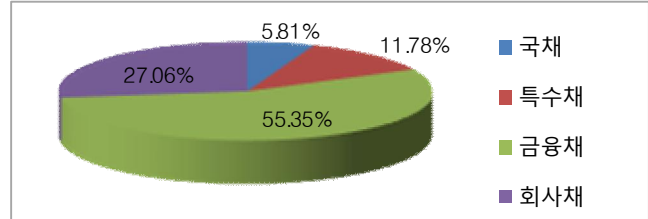
-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2022.11.13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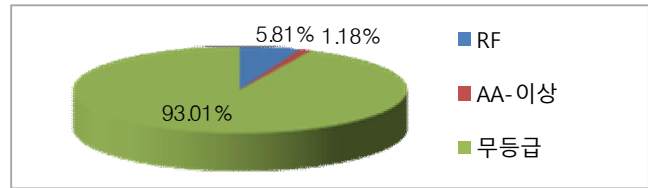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중
국채	494	5.81%
특수채	1,003	11.78%
금융채	4,708	55.35%
회사채	2,302	27.06%
합계	8,507	100.00%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2022.11.13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금액	비중
RF	494	5.81%
AA-이상	100	1.18%
무등급	7,913	93.01%
합계	8,507	100.00%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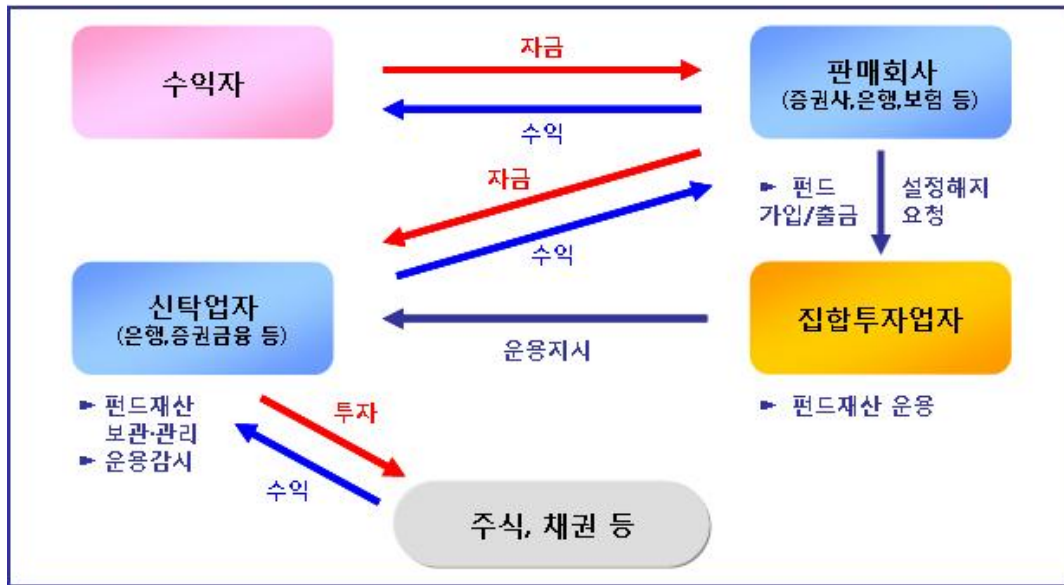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퀘어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자본금	7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2) 주요 업무

가.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우리펀드서비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 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제34(당)기 2021.12.31현재	제33(전)기 2020.12.31현재	구분	제34(당)기 2021.01.01 ~ 2021.12.31	제33(전)기 2020.01.01 ~ 2020.12.31
현금및예치금	23	40	영업수익	972	810
증권	2,202	1,633	영업비용	582	447
파생상품자산	-	-	영업이익	390	363
대출채권	44	37	영업외수익	19	7
유형자산	12	11	영업외비용	0.02	1
사용권자산	41	5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409	368
기타자산	172	144	법인세비용	99	87
자산총계	2,495	1,916	당기순이익	310	281
예수부채	3	3	기타포괄손익	-	(1)
리스부채	38	46	총포괄손익	310	280
기타부채	226	164			
파생상품	-	-			
부채총계	266	213			
자본금	710	410			
자본잉여금	171	173			
이익잉여금	1,348	1,120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자본총계	2,229	1,702			
부채및자본총계	2,495	1,916			

4) 운용자산규모

[2023.03.22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23,339	71,499	1,825	55,725	10,485	45,635	33,266	3,114	117,821	362,709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농협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연락처: (02) 2080-5114)
홈페이지	www.nonghyup.com

2) 주요 업무 등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 등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60길 17

	(연락처: (02) 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m

2) 주요 업무 등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연락처: (02) 399-335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채권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엔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연락처: (02) 721-5300 -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등

가.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

나.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 총회 등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채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채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채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 (www.kiwoom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법에서 정한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처리계획(해지, 합병,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 소규모 펀드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나.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합니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게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 경과시점에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공동매매처	계열회사	중개거래	채권	932,524
키움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채권	4,888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 간의 거래내역입니다.

2)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주식 및 인덱스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채권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	------------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계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종류형 펀드는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